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

1. 코스피200 옵션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

가. 사건의 개요

■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 甲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,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위하여 물량소진 및 허수주문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반복한 사건임

나. 조사결과

□ 시세조종 금지 위반

◦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인 甲은 2013.7.1 ~ 2015.3.31 기간 중 코스피 200 옵션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총 6,930,535 계약을 매매하는 과정에서,

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중 수십차례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구축 또는 청산하기 위하여 물량소진주문 및 허수주문 등 총 26,663회에 걸쳐 18,337,370계약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

코스피200 옵션 33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약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

다. 조치내용

□ 고 발 : 甲[前 C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]

문의 : 특별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 안승근
(☎02-3145-5108)

참고 : 혐의자의 시세조종 개요

□ 혐의자는 장중에 매수·매도를 반복하고, 장종료 후에는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지 않는 데이트레이더이자, 짧은 시간내에 1 ~ 2틱의 매매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스캘퍼(Scalper)로서

◦ 대량의 연속주문 등을 이용하여 매도(매수)1호가 잔량을 모두 소진시킨 후

◦ 매수(매도)1~2호가 등에 체결의사 없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신규제출하고, 사전에 제출해 놓은 매도(매수)1~3호가의 매도주문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호가잔량을 변동시켜 매수(매도)세를 유인하고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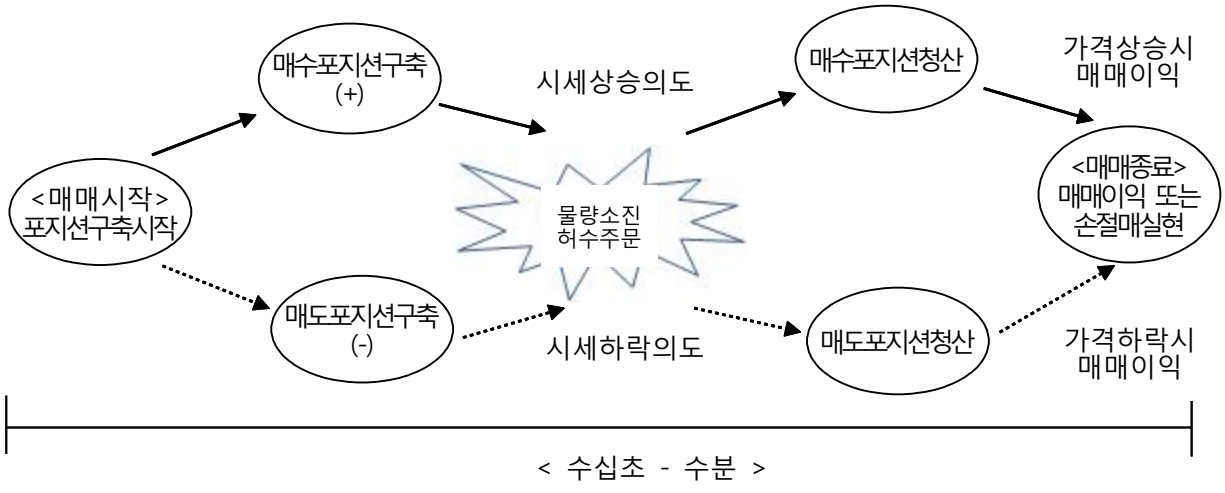
◦ 이후 가격이 상승(하락)하면 매도(매수)주문을 제출, 포지션을 청산하여 매매이익을 실현